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아동가족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아동가족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으로 전부개정 시행(2022. 6. 8.)됨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된 법 사항을 반영하고,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으로 전부개정('22. 6. 8.)됨에 따라 조례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
-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을 ‘경력단절여성 등’에서 ‘여성’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- 또한, 법 제2조제3항을 반영하여 ‘경력단절 예방’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 법 제15조제1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9. 2일부터 9.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. 10. 29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니기에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

-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4117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11. 6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
(아동가족과장)

1. 제안이유
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으로 전부 개정(2022. 6. 8.시행)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-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을 ‘경력단절여성 등’에서 ‘여성’으로 확대
(안 제1조~제5조)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~제2조)
 -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 신설
- 상위법(법 제15조제1항)을 반영한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
(안 제5조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의견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4) 입법예고(2024. 9. 2.~9. 23.): 의견없음

5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
2. 구인·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
3.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
4. 직업교육훈련 지원
5.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
6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
7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

의 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직업교육훈련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